



#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미부과 결정(홍은동 191-270외3필지 주택건설사업)**

1. 지적과-1082(2015.1.26.) 서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처리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홍은동 191-270 외3필지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 접수되어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종료시점지가와 사업인가일의 개시시점지가 등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바,

4.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아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없음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홍은동 도시형생활주택(가동)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나. 대상토지 : 홍은동 191-270 외3필지

다. 납부의무자 : (주)현영종합건설

라. 사업면적 : 426㎡ (홍은동 191-149외3필지 연접사업지)

마. 사업기간 : 2014. 3. 7 ~ 2014. 9. 5.

바. 개발이익 산출내역 : ①-②-③-④-⑤ = ⑥

구 분	산출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660,492,378	2,700㎡이하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비용산정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② 개시시점지가	588,328,045	
③ 개발비용	63,663,121	
④ 정상지가상승분	14,596,041	
⑤ 기부채납금액	120,393,654	
⑥ 개발이익	-126,488,483	
⑦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없음	

- 붙임 : 1)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보고서(별도 결재) 1부.  
2)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1부.  
3) 관련 문서 1건.(별도첨부) 끝.

---

주무관

**김현민**

지가조사팀장

**오은정**

지적과장

**김홍길**

경제재정국장

02/10  
**김종두**

협조자

시행 지적과-1888 ( ) 접수 ( )

우 120-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 <http://www.sdm.go.kr>  
전화 330-1256 /전송 330-1498 / 대시민공개